

제245회 정례회
2005. 12 12(월)

검 토 보 고 서

-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사회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 전문위원 김재준입니다.

□ 2005년 11월 1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 『학교보건법시행령』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운영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은,

- 안 제2조에서는 교육감 소속의 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폐지하고, 지역교육청 교육장 소속하에 두며
- 안 제3조에서는 정화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수는 13 ~ 17인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 및 관련기관의 공무원과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중 교육장이 임명·위촉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고
-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보권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되,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며

- 안 제10조에서는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개정 조례안은 교육감소속하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두고 또한 지역교육장 소속하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둘 수 있던 기존의 학교보건법시행령이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소속하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둔다」로 개정됨에 따라 교육감소속하의 정화위원회를 폐지하고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이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육장에게 권한위임되어 실질적으로 학교환경위생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지역교육장 소속하에 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충청북도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